

2023 내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

1. 감사대상 기간: 2023.1~2023.12. (2023학년도)

2 서면 및 실지 감사 기간: 2024.1.3.(수)~1.16.(화)

3 감사 범위: 직제표 상 전체 부서 행·재정 업무 전반

4 감사 인원: 총 5명(신성환교수, 유동호교수, 이상인차장, 박남희과장, 이영주과장)

5 감사 결과

가. 형태별 건수

구분	전년도 감사 지적 처분사항 미이행	행정부문	재정부문	비고
지적건수	0	2	3	

나. 전년도 내부감사 지적사항 처분에 대한 미이행 : 미이행 사항 없음

다.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(안)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<p>교원 신규 임용 절차 이행기간 충분한 확보 필요 [교무처(교무과)]</p>	<p>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시 일부 채용 건의 경우 조회 결과 회보 전에 인사위원회가 소집 및 개최된 것을 확인함.</p> <p>1) 23년 2학기(10.1. 임용) 교원 인사의 경우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 후, 결과가 접수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 요청함.</p> <p>2) 24년 1학기(1.1, 3.1 임용) 교원 인사의 경우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 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 요청하고, 개최함.(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조회 결과 문제가 없을 때 임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처리 내용 포함)</p> <p>이에 「신규교원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3조(임용절차)에 의거 임용제청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조회가 완료된 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함.</p> <p>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 3(임명의 제한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 4(결격 사유)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(신원조사) 「신규교원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3조(임용절차)</p>	<p>○ 권고 「신규교원 임용절차에 관한 규정」 제3조(임용절차)에 의거 임용제청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조회가 완료된 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권고</p>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<p>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비자심사 강화대학 기준 미충족 [학생처] [국제협력본부]</p>	<p>「2023학년도 교육국제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/관리 실태조사」 핵심지표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비자심사 강화대학 기준이 60%미만으로 되어있으나 본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은 56.53%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.</p> <p>본교 외국인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기준 결과, - 외국인 신입생 장학금 기준 1) 외국인 신입생: 등록금 40% 감면 2) 토픽 급수에 따른 등록금 차증 감면: 10~40 % 3) 본교 한국어교육센터 2학기 이상 이수자: 20% 4) 교류기관 추천: 10% - 외국인 재학생 장학 기준 1) 직적학기 평점에 따른 장학금 : 평점 2.50 이상자 30%~70% 2) 한국어능력 향상 장학금 1등급 상향시 10% 추가</p> <p>외국인 신입생 1인 기준 최소 40% 이상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됨.</p> <p>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9조 5항에 따르면 외국인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은 국제협력본부에서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라고 되어 있으며, 장학금 기준 설정을 위한 장학위원회 개최 시 관련 대내외 기준 및 평가지표 점검 필요하며,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비자심사 강화대학 기준(60%미만)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본부는 제도 개선 필요함.</p> <p>「2023학년도 교육국제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/관리 실태조사」 「장학금 지급규정」 제9조(장학금 신청)</p>	<p>○ 개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이 비자심사 강화대학 기준(60%미만)에 미충족되는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수립 및 개선</p>
<p>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미준수 [기획처 기획예산과]</p>	<p>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·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교육부의「2022회계년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」을 보면,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</p>	<p>○ 개선 차기 결산 시 개선요망</p>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	<p>록금 회계 수입 총액(자금계산서 기준)의 일정비율('18년 이후) 1%) 이내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.</p> <p>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결산 내역 확인 결과 학교등록금회계 이월금 내역 중 기타이월 (344,303,119원)비율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상 수입총액(19,772,428,158원)의 1.74% 로 교육부 기준(1%)을 초과함.</p> <p>또한 2021회계연도 기타이월금 초과분(1.36%) 보다 2022 회계연도 기타이월금(1.74%) 초과분이 0.38% 증가한 사실을 확인함.</p> <p>「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」 제4조 및 제22조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4(이월금) 교육부 「2022회계년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 사항」</p>	
<p>퇴직적립금 누적액 관리 [총무처 총무과]</p>	<p>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, 제8조, 제9조 등에 의거,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,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기한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</p> <p>한라대학교 주관, 각 정부지원사업단의 경우 연차별 사업경비에 맞추어 인건비를 산정 지급하고, 사업비 내에서 1년 이상의 전담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누적 적립하고 있음.</p> <p>단, 회계말 기준 일부 사업단의 퇴직적립 누적액이 기준액 대비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.</p> <p>근로자퇴직급여는 법으로 지급액이 보장되는 바, 사업종료 시점의 퇴직적립금 부족액을 추후 교비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, 연차별 사업단 소속 전담직원 인건비 편성 시 과소 적립되지 않게 각 사업단별 퇴직적립액 점검 및 지급 부서(총무과)의 관리가 필요해 보임.</p> <p>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, 제8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), 제9조(퇴직금의 지급 등)</p>	<p>○ 개선</p> <p>연차별 사업단 소속 전담직원 인건비 편성 시 과소 적립되지 않게 각 사업단별 퇴직적립액 점검 및 지급 부서(총무과)의 관리 필요</p>

지적 건명	지적내용	처분(안)
<p>교내연구비 절차 및 관리업무 개선 [산학협력단]</p>	<p>「VISION 2030 대학종합발전계획서」 연구·산학 영역의 핵심과제인 연구 활성화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따르면 교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에 신임교수 및 기초분야 연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,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교내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공고 시 정해진 소정 기간에 교내 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, 본교는 교내 연구비 신청 기간이 2023.2.7.(화) ~ 2.20.(월)까지로 신규 임용되는 신임교원(3월1일자)의 경우 1학기에 교내연구비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.</p> <p>따라서 교내연구비 신청 및 지급의 공정성과 VISION 2030 대학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규임용 교원에게 교내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필요함.</p> <p>또한 2023년도 시행된 교내연구비의 선지급으로 인한 성과 분석 및 업무 효율성(연구비 반환, 사전 신청으로 인한 과중되는 업무 절차 등)대한 재점검이 필요함.</p> <p>「교내연구비 관리 규정」 「VISION 2030 대학종합발전계획서」</p>	<p>○ 개선 교내연구비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업무개선</p>